

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

[[]가로주택정비사업, []소규모재건축사업, []소규모재개발사업]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조합 명칭				
	대표자	성명	생년월일		
		주소	전화번호		
조합 개요	주된 사무소 소재지		전화번호		
	사업 시행 구역	명칭	면적		m²
		위치			
	조합원 수		명		
조합 해산 동의 사항	토지등 소유자 수	명		동의율	% (동의자 수 / 토지등소유자 수)
		(토지소유자: 명)			
		(건축물소유자: 명)			
		(지상권자: 명)			
해산사유					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

조합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

수수료
없음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



접 수



확 인



조합설립인가
취소 통지

신청인

처리기관: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